



제 439회 국회 (정 기 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익목적회사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익목적회사 설립 ·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391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7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7
2. 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11
3. 조문별 검토	18
가. 총칙(안 제1장)	18
나. 설립 및 인가(안 제2장)	21
다. 운영(안 제3장)	26
1) 공익목적사업 (안 제10조)	26
2) 이익의 배당 제한(안 제11조)	29
3) 변경인가(안 제12조)	32
4) 조세감면 및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34
라.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안 제4장)	38
1) 합병 및 분할의 제한 (안 제15조)	38
2) 해산 시 잔여재산의 공익적 귀속(안 제18조)	41
마. 공개 및 감독(안 제5장)	45
바. 부칙	5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08. 03.
3. 회 부 일 : 2026. 08. 06.

II.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영리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는 엄격한 인증 요건 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을 뿐 아니라 인증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설립 단계부터 공익목적을 정관에 명시하면서도 「상법」상 회사 형태를 기반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경영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하고,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 운영, 공시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기업경쟁력을 조화롭게 실현

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회사의 정의(안 제2조)

공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식회사로 정의함.

나. 공익목적회사의 법인격 및 명칭(안 제3조 및 제4조)

- 1) 공익목적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함.
- 2) 공익목적회사의 상호에는 공익목적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자는 공익목적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공익목적회사의 설립 및 인가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1) 공익목적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고, 창립총회 결의를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2) 공익목적회사는 정관에 목적, 이익 등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3) 공익목적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공익목적회사의 사업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1) 공익목적회사는 공익목적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주된 사업을 공익목적회사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함.
- 2) 공익목적회사는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 한도에서 이익배당을 하며, 이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의 반환을 명령 또는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3) 공익목적회사는 정관변경,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양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기타 조직변경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마. 공익목적회사의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 1)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2)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융자·보증 또는 투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기타 공익목적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공익목적회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안 제15조)

- 1) 공익목적회사는 이 법에 따른 공익목적회사 이외의 법인과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함.
- 2) 「상법」의 절차에 의해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며, 그 절차가 끝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하도록 함.
-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공익목적회사는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사. 공익목적회사 잔여재산의 처리(안 제18조)

공익목적회사가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공익목적회사,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국고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도록 함.

아.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안 제19조 및 제20조)

- 1) 공익목적회사는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채권자와 주주

는 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2) 공익목적회사는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다만, 기획예산처 장관이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공시서류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하며 통합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익목적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자. 감독·조사 등(안 제21조)

- 1)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익목적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2) 기획예산처 장관은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익목적회사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목적회사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3) 기획예산처 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공익목적회사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공익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4) 기획예산처장관은 감독의 결과 공익목적회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차. 설립인가의 취소(안 제22조 등)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기한 내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카. 과태료(안 제24조)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자가 공익목적회사와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회사가 설립인가·등기의무, 운영의 공개의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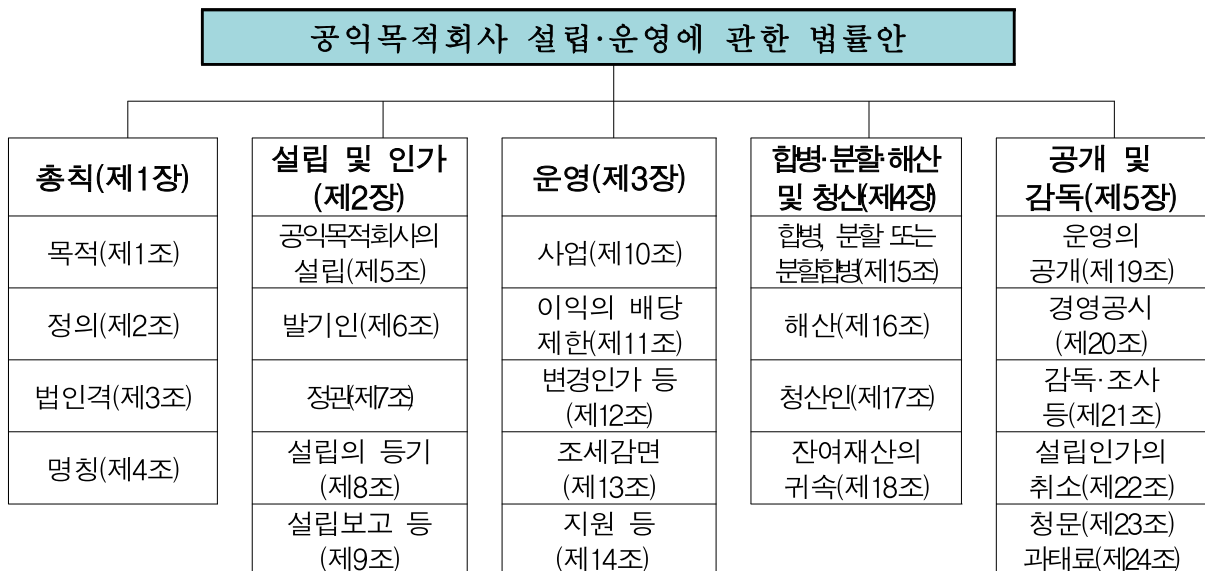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공익목적사업 수행, 이익배당 제한 및 잔여재산의 귀속 제한 등을 통해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공익목적회사 및 공익목적 사업의 정의, 설립 절차, 운영 요건, 국세·지방세 감면 및 융자·보증·투자 등 재정 지원, 감독·제재 등 총 5개의 장과 2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공익목적회사를 공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식회사로 정의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목적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발기설립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목적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60퍼센트 이상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익배당 및 자산 처분에 관한 제한을 두어 이익배당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을 한도로 허용하며, 공익목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의 공익목적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공익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 감면과 융자·보증·투자 등 금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목적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 정관, 회계장부 및 결산보고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익목적회사의 공익성 및 법적 요건 준수 여부를 관리하

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목적(안 제1조)	- 공익성과 경쟁력을 갖춘 회사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정의(안 제2조)	- 공익목적회사: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 공익목적사업: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법인격 및 명칭(안 3조·제4조)	- 공익목적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고, 비인가자의 ‘공익목적회사’ 명칭 사용을 제한
제2장 설립 및 인가	
설립인가(안 제5조)	- 발기설립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익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인가
정관 기재사항(안 제7조)	- 공익목적, 이익배당 제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
제3장 운영	
공익목적사업(안 제10조)	- 공익목적회사는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목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전체 사업의 6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으로 운영하여야 함
이익배당 제한(안 제11조)	-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배당하도록 제한

변경인가 (안 제12조)	- 정관상 공익목적·배당·잔여재산 관련 사항 변경, 영업 전부의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에 대해 사전인가
조세감면 및 지원 (안 제13조·제14조)	- 관계 법령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융자·보증·투자,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
제4장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합병·분할 제한 (안 15조)	- 일반 법인과의 합병·분할 등을 제한하고, 공익목적회사 간 합병·분할은 장관의 인가를 거쳐 허용
잔여재산의 공익적 귀속 (안 제18조)	- 해산 시 잔여재산의 주주 분배를 금지하고 유사 공익목적회사·비영리법인·공익법인 또는 국고에 귀속
제5장 공개 및 감독	
경영공시 (안 제20조)	- 정관, 결산보고서, 주주총회·이사회 활동 및 사업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감독·조사 (안 제21조)	- 업무·재산에 관한 보고 및 검사 요구, 법령·정관 위반 시 시정명령 등 감독권한 부여
설립인가취소 (안 제22조)	- 사업 미개시·장기 중단, 시정명령 불이행, 인가기준 미달 등을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필요적 취소
벌칙·과태료 (안 제24조)	- 명칭 사용, 무인가 영업, 공시의무 위반, 허위보고 및 검사 거부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부칙	
시행일 (부칙 안 제1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경과조치 (부칙 안 제2조)	- 법 시행 당시 유사 목적의 사업자 또는 법인은 2년 이내 설립등기하도록 함

2. 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제정안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식회사를 ‘공익목적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목적사업의 수행, 이윤배분 및 잔여재산의 귀속 제한, 경영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금융 등 지원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른 공익목적회사와 유사하게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제도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운영되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증받은 경우 인건비·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¹⁾.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법인세, 소득세 감면 및 판로지원 등의 지원이 제공됨.

1) 관계부처 합동,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2023.9.). 인건비, 창업지원비 등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은 '17년 1,346억원에서 '23년 2,022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유사 입법례 비교]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공익목적회사 (공익목적회사설립운영법안)
정의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 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지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 동조합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 는 일지리를 제공하거나 지 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 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 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제도	인가제·법인격부여(중앙부처)	인증제-자격부여(노동부)	인가제·법인격부여(기획처)
조직형태	비영리	영리와 비영리 포함	영리(주식회사)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공익증진형	- 지역사회공헌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기타(창의·혁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 기타공익증진형
유급근로자 고용	제한없음	1인 이상 고용	제한없음
사회적 목적 실현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공익목적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60% 이상
의사결정 구조	총회, 이사회(1인1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민주적 구조	주주총회, 이사회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해당없음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해당없음
이윤배분	이윤배분 금지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1/3 범위 내	배당가능이익의 1/3 범위 내
잔여재산 처리	-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 국고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사회적 기업 공익적 기부 등)에 재투자	- 유사한 목적의 공익목적회사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 국고
세제혜택	해당없음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감면, 그 후 2년 50% 감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업종제한	금융·보험업 불가 (조합원 대상으로 소액대출·상호부조 가능)	-	-

자료: 기획예산처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 제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규모화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간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라 기존의 획일적·직접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따른 지원 차등화, 판로·투자 등 간접지원 확대 및 우수기업의 규모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²⁾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설립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매출 및 수익성 등 경영성과가 영세한 수준으로 자립적인 경영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어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규모화 및 자립적 경영기반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³⁾

2)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2023.9.). 동 계획은 2022년 기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따른 정부지원 차등화, 간접지원 내실화 및 우수 사회적기업의 규모화 등을 사회적기업 혁신 전략의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3) 관계부처 합동,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2024년 기준 협동조합은 26,539개가 설립되었으나 실제 운영 중인 조합은 14,285개로 운영률이 53.8%이며, 평균 매출액은 2022년 3.7억원에서 2024년 3.2억원으로 감소하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118만원에서 △1,180만원으로 감소함.

[제3~7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구분	3차 조사 (’16년)	4차 조사 (’18년)	5차 조사 (’20년)	6차 조사 (’22년)	7차 조사 (’24년)
설립 수* (누적 수)	2,180개소 (10,887개소)	2,211개소 (15,127개소)	2,860개소 (20,499개소)	2,128개소 (25,546개소)	1,963개소 (29,611개소)
운영 조합수** (운영률)	5,100개 (53.4%)	7,050개 (54.2%)	8,926개 (49.5%)	10,976개 (50.1%)	14,285개 (58.3%)
종사자 규모	6.9만명	19.6만명	13.7만명	19.0만명	21.6만명
매출액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2억 9,512만원	3억 7,470만원	3억 1,973만원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합계

** 운영 협동조합: 해당연도에 조세신고 또는 고용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협동조합

자료: 기획예산처

이에 제정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업의 경영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익적 기업모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특히 기존의 사회적경제 제도가 규모화·자립성 확보 및 다양한 사업영역으로의 진출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 자율성과 영리기업의 자본조달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웠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문제 해결 및 공익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는 영국의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⁴⁾ 및 미국의 공익적 영리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PB

4) 공동체 이익회사(CIC)는 영국에서 「Companies Act 2006」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회사 형태로, 일반적인 유한회사와 같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지역사회 또는 특정 공동체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임. 설립 시 ‘공동체 이익성 심사(community interest test)’를 거쳐야 하며, 회사의 자산과 이익이 사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자산귀속 제한(asset lock) 및 배당 제한 등을 두고 있고, 매년 공동체 이익의 실현 및 이해관계자 참여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C)5)과 같이 영리기업의 경영방식과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결합한 기업형태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익적 활동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공익적 기업모형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따른 공익목적회사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공익실현이라는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에 따른 공익목적회사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게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 간 지원체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의 사회적 경제 제도와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공익목적회사는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으로 설립할 수 있는 만큼, 조세·금융 등 지원이 기존 제도와 중복되거나 특정 조직 형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에 따른 공익목적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를

5) 공익적 영리법인(PBC)은 미국의 각 주 회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영리회사 형태로, 주주에 대한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정관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공익적 목적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경영하도록 하는 제도임. 일반적인 영리회사와 달리 이사에게 주주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 및 근로자·소비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부 주에서는 공익목적의 수행 정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음

취하면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량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귀속을 제한하는 등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주주의 이익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형태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본과 경영역량을 유입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한이 투자 유인과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주주의 권익과 공익목적의 실현 간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설립인가, 감독 및 시정명령, 인가취소 등의 관리체계를 두고 있는데, 공익목적회사 관리·감독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자율성과 제도 도입의 실익이 저하될 수 있는 반면, 감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세제·금융 등 특례에 상응하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자 간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면서도 공익 목적의 실질적인 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제정안에 따른 공익적 목적은 사회적기업 등 기존 제도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익목적 회사의 인가·감독·공시 및 공익목적사업 이행 여부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행정체계가 필요하므로, 법인격 신설에 따른 제도적 편익이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부담을 상회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조문별 검토

가. 총칙 (안 제1장)

제 정 안
○ 목적(안 제1조) -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경쟁력을 갖춘 회사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 ○ 정의(안 제2조) - 공익목적회사: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 - 공익목적사업: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 등) ○ 법인격 및 명칭 (안 제3조 및 제4조) - 공익목적회사의 법적 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며, 이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 -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자는 '공익목적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목적회사 및 공익목적사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목적회사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안 제2조는 공익목적회사 및 공익목적사업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공익적 목적’ 및 ‘공익적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 여부 및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제정안은 안 제10조제1항에서 공익목적사업의 유형을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 및 공익적 가치의 의미와 판단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익목적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의 조항에서 공익적 목적 및 공익적 가치에 관한 기본적인 판단요소 또는 판단방향을 법률에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경쟁력을 갖춘 회사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목적회사”란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공익목적사업”이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① 공익목적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공익목적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명칭) ① 공익목적회사의 상호에는 공익목적회사라는 문자를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자는 공익목적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나. 설립 및 인가(안 제2장)

제 정 안
○ 설립인가 제도 (안 제5조) - 인가제 도입: 공익목적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발기인에 의한 설립 절차(발기 설립)를 마친 후,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 기준: 기획예산처 장관은 해당 회사가 추구하는 공익성 및 지속가능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 정관 기재사항 (안 제7조) - 공익 목적, 이익 배당 제한,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처리에 관한 사항 정관에 명시

안 제5조제2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설립인가를 할 때 공익성 및 지속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6조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법에 따른 일반적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의 자격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결격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신용협동조합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같이 다수인의 자금이 출자되거나 특정한 공익적·경제적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발기인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입법례를 고

려할 때⁶⁾ 제정안에서 공익목적회사의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자격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익목적사업의 건전한 수행과 회사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한편, 안 제6조제5호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발기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법률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발기인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관련 법령’을 발기인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입법례에서도 관련 법률의 범위를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도 ‘관련 법률’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6)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5조(공익목적회사의 설립) ① 공익목적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설립절차,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성 및 지속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목적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 정 안

4.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조(정관) 공익목적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공고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이익 등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0. 주식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8조(설립의 등기) ① 공익목적회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와 제10호의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7조에서 정한 사항

제 정 안

7.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1.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제9조(설립보고 등)** 공익목적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영(안 제3장)

1) 공익목적사업(안 제10조)

제 정 안
○ 공익목적사업의 수행 의무 (안 제10조) - 공익목적회사는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목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며, 전체 사업 활동량 중 공익목적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 되어야 함.

안 제10조제2항은 공익목적사업이 공익목적회사 전체 사업활동의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익목적사업의 수행비율을 정량적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목적회사의 주된 사업이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제정안과 유사하게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관한 현행 제도를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주 사업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⁷⁾⁸⁾ 「사회적

7)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⁹⁾.

이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업내용과 운영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8)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지역특산물·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0조(사업) ① 공익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 그 밖에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공익목적회사 전체 사업활동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익의 배당 제한(안 제11조)

제 정 안
○ 배당제한 및 반환명령 -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익을 배당 -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안 제11조는 공익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 범위에서만 이익을 배당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법」 제462조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¹⁰⁾, 제정안은 이에 대한 특례로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을 배당한도로 정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이익을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에 따른 공익목적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데 배당제한은 주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배당한도를 제한하면 공익목적회사의 주주가 될 경제

10)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적 유인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공익목적회사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소지가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이윤을 근로자·주주 등에 배분하는 경우에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1 범위에서만 배분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제정안의 배당제한과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음¹¹⁾. 다만 사회적기업과 달리 제정안의 공익목적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영리회사와 비교하여 투자자의 경제적 유인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배당제한의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한국거래소가 2026년 4월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12월 결산 현금배당 법인 배당현황」에 따르면, 2025년 코스피 배당법인의 평균 배당성향은 39.83%, 코스닥 배당법인의 평균 배당성향은 37.4%인 것으로 나타남.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1조(이익의 배당 제한) ① 공익목적회사는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 가능이익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사채권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변경인가 (안 제12조)

제 정 안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인가 - 목적, 이익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정관 내용의 변경 -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 공익목적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변경

안 제12조는 공익목적회사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정관 중 목적 및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의 변경, 영업 전부의 양수·양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익목적회사가 제정안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 및 제14조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¹²⁾ 지원받은 재원이 공익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익목적회사의 법적 지위 변경을 통해 사실상 공익목적사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배당·잔여재산 분배 및 합병·분할 등 공익목적회사의 공익성과 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12) 제13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융자·보증 또는 투자
2. 공익목적회사를 창업하려는 자 및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3. 그 밖에 공익목적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2조(변경인가 등) 공익목적회사는 설립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관 중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3. 공익목적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변경

4) 조세감면 및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제 정 안
○ 조세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 기획예산처의 지원 - 융자·보증 또는 투자 - 창업하려는 자 및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 실태조사

안 제13조는 공익목적회사의 운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융자·보증·투자 등의 금융 지원과 공익목적회사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조세감면 및 재정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공익목적회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안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은 구체적인 감면 내용과 대상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세법에 규정되어야 하므로, 향후 관련 세법의 개정 필요성과 기존의 조세지원 제도와 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14조에 따른 금융지원 중 ‘투자’와 ‘보증’은 국가의 재정이 직접 투입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재정적 성격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먼저, ‘투자’의 경우 공익목적회사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가의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는 통상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같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정 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¹³⁾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과 같이 국가가 조합 등에 출자하고 해당 기구를 통하여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방식¹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가가 민간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은 국가의 통상적인 재정운용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14조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공익목적회사의 자금조달

13)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 보증제도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체계상 공적 보증 제도는 일반회계를 통해 수행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등 별도의 법정 기금 또는 재단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보증기금이 없는 상황에서 제정안과 같이 기획예산처장관이 직접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경우 이는 국가가 직접 공익목적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 경우 안 제14조에 따른 보증행위가 공익목적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보증채무’에 해당하게 되는데, 「국가재정법」 제92조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관리 및 국회의 통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¹⁵⁾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3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용자·보증 또는 투자 2. 공익목적회사를 창업하려는 자 및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3. 그 밖에 공익목적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5)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안 제4장)

1) 합병 및 분할의 제한(안 제15조)

제 정 안
○ 합병 및 분할의 제한 (안 제15조) -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과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금지 - 공익목적회사 상호 간의 합병·분할은 허용하나,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필요

안 제15조제1항은 공익목적회사가 공익목적회사 이외의 법인과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공익목적회사와 일반 기업 간 결합으로 공익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공익목적회사와 일반 법인 간의 합병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공익목적회사의 사업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화 등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합병 이후에도 공익목적사업의 지속 및 공익목적회사로서의 요건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까지 합병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법인과의 합병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합병 후에도 공익목적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거나, 공익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합병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합병 등을 허용할 경우 공익목적회사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세제상 혜택 등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가 취약한 일반 법인과 결합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공익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합병 등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 상대방의 재무상태, 공익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정부 지원의 적정한 관리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5조(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① 공익목적회사는 이 법에 따른 공익목적회사 이외의 법인과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② 공익목적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공익목적회사는 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합병으로 소멸하는 공익목적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익목적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익목적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공익목적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의 공익적 귀속(안 제18조)

제 정 안
○ 해산 시 잔여재산의 공익적 귀속 (안 제18조) - 공익목적회사의 해산 시 채무 변제 후 남은 잔여재산의 주주 분배 금지 - 잔여재산은 유사 목적 공익목적회사,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또는 국고에 귀속

안 제18조는 공익목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의 공익목적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국고 중 하나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익목적회사가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해산을 계기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여재산을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공익목적회사와 유사한 사회적기업 제도의 경우에도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이 해산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하도록 하는 등¹⁶⁾ 법인 형태와 특성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방식을

16)「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달리 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른 공익목적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상법」 제538조는¹⁷⁾ 회사의 모든 채무와 청산비용을 변제한 후 남은 잔여재산을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에 대하여 해산 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특정한 공익적 주체 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재산관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주주가 출자에 따라 보유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됨.

또한,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회사에 대한 지원은 조세감면 외에 융자·보증·투자 등의 금융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융자는 상환을 전제로 하고, 투자는 국가가 자본을 출자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갖는 방식이며, 보증 또한 실제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가 공익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8. (생략)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17)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적회사에 무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익목적회사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해산 시 모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그 비례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공익목적회사의 주주가 민간 투자자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산 시 잔여재산이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구조는 투자원금 회수 및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를 제한하여 민간의 출자 유인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공익목적회사의 자본조달을 어렵게 하여 제정안이 의도하는 공익목적회사의 설립 및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공익목적회사의 공익적 성격과 국가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잔여재산의 귀속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의 지원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과 민간의 출자 및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성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잔여재산의 귀속 범위와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6조(해산) ① 공익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또는 분할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설립인가의 취소 ② 공익목적회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청산인) ① 공익목적회사가 해산한 경우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공익목적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청산계획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였으나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공익목적회사가 해산한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시켜야 한다. 1. 유사한 목적의 공익목적회사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 국고

마. 공개 및 감독(안 제5장)

제 정 안
○ 경영공시 의무 (안 제20조) - 공시 항목: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보고서 등 - 공시 방법: 해당 자료를 기획예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기획예산처 장관은 통합 공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기획예산처 장관의 감독 및 조사 권한 (안 제21조) -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직접 검사할 수 있음. - 법령, 명령 또는 정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 가능 ○ 설립인가의 취소 (안 제22조) - 취소 사유: 일정 기간 내 사업 미개시, 장기간 사업 중단, 2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인가 기준 미달 등 - 필요적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절차적 통제: 인가 취소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 ○ 벌칙 및 과태료 (안 제24조) -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무인가 영업, 공시의무 위반, 허위 보고 및 검사 거부 등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안 제20조는 공익목적회사로 하여금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기획예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21조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와 장부·서류 등에 대한 검사권을 부여하고, 법령·명령·정관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주주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거나 공익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시 및 감독 규정은 공익목적회사의 공익목적사업 수행 여부와 정부 지원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한편, 안 제23조에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립인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5조제8항에 따른 합병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별도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합병등기는 합병의 효력 및 회사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합병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 또는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4조제1항제2호는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익목적회사로서 영업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목적회사는 설립인가를 받아야 그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공익목적회사로서 영업’하는 행위가 일반 주식회사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공익목적사업 자체는 인가를 받은 공익목적회사에만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과태료로 제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반면, 해당 규정이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공익목적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공익목적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정안에 따른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라면, 이러한 행위는 안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자가 공익목적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이미 포함될 수 있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9조(운영의 공개) ① 공익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주주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주주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자와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경영공시) ① 공익목적회사는 기획예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익목적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목적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목적회사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감독·조사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목적회사(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

제 정 안

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목적회사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공익목적회사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공익목적회사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공익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익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공익목적회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공익목적회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익목적회사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2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 정 안

3. 제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2조에 따라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목적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5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익목적회사로서 영업한 자

3.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9조에 따른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0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한 자

6.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하여 거짓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

7. 기획예산처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바. 부칙

제 정 안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경과조치 - 법 시행 당시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설립등기

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법 시행 당시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목적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목적회사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공익목적회사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공익목적회사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익목적회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151